원익IPS Co. Ltd.

[원익 IPS Co. Ltd.]

IP-PBX SYSTEM MAINTENANCE AGREEMENT

2013.01

IP-PBX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

1. 계 약 명: IP-PBX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2. 계약 금액: 월 유지보수료 :\500,000 원(VAT 별도)

연간 유지보수료 :\6,000,000 원(VAT 별도)

3. 계약 기간: 2013 년 01월 01일 - 2013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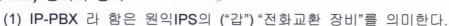
4. 계약대상자 : (갑) 원익 IPS Co. Ltd (을) 대신네트웍스

원익 IPS Co. Ltd. (이하 "갑"이라 함)과 (주) (이하 "을"이라 함)은 IP-PBX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IP-PBX 장비"(첨부#1 월 유지보수장비 세부 내역)를 "을"이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양측이 협력할 내용, 역할, 권리 및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2) 서비스라 함은 "을"이 IP-PBX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3) 유지보수라 함은 IP-PBX시스템을 "갑"의 서비스 운영에 최적의 상태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관리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 (1)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가격
 - 가. 서비스 종류 : 9 X 5 운영지원 서비스
 - 나. 계약 서비스 대상: IP-PBX시스템(첨부#1. 월 유지보수장비 세부내역)
 - 다. 서비스 내용 : 제3조 2항
 - 라. 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 서비스 기간 중 매월 말 청구하고 "갑"의 표준 지급 규정에 의거 현금지급
- (2) "을"이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비스 운영 중 장애 발생시 긴급 조치

(제4조) 유지보수 서비스 상세 내용

- (1) 서비스 개요
 - 가. 계약 대상 IP-PBX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IP-PBX 시스템을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 (2) 장애처리서비스
 - 가. 서비스 운영 중 장애 발생시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 나. 계약한 서비스 대상에 대한 장애처리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다. 9 X 5 평일(09:00~18:00)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조치할 수 있다.
 - 라. 장애접수에 대한 응답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 장애조치를 개시하는 시간은 2시 간 이내이다.
 - 마. 장애 조치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나 서비스 대상 제품의 기술적 한계로 긴급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 (3) IP-PBX시스템 관리 지원 서비스
 - 가. 계약한 서비스 대상에 대하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서비스 내용은 하드웨어 장애처리이다.
- (4) 계약 서비스대상
 -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는 "첨부#1 월 유지보수장비 세부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IP-PBX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 나. 계약 기간 중 "갑"와 최정에 의하여 IP-PBX 장비를 설치 및 변경 할 경우, "갑"과 "을"이 협력하여 변경작업을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기술 용역 비용을 "갑"의 동의 하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다. 계약 기간 중 IP-PBX 장비가 증감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통지와 "갑과 "을"의 확인으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첨부#1 월 유지보수장비 세부 내역"에 추가하고 유지보수료는 다음 해 유지보수계약 체결 시에 반영한다.

(제5조) 유지보수 서비스 방법

- (1) 담당 엔지니어를 지정하여 접수 및 지원의 효율을 기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 (2) "을"은 지원 인력의 공백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1주일 전 "갑"에게 대체인력에 대한 내용 및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01 월 01 일부터 2013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2)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을"은 "갑"에게 유선,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계약종료를 미리 고지하고, 쌍방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7조) 검수 및 인수

- (1)"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정기점검 결과 및 제공한 서비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산출물 제공 : 장애처리 결과,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제공하며 시스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갑"에게 권고를 한다. 보고서 양식과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소유권

(1) "을"이 계약기간 동안 "갑"의 요청에 의해 만든 산출물이나 취득한 정보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하되 "을"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갑"의 동의 없이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갑"의 피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1)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 상의 이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은 30일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2)다음과 같은 경우 "갑"은 즉각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가."을"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받았을 때

나."을"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양도, 합병 또는 해산을 결의했을 때

다."을"이 발행한 수표, 원용 등이 부도 처리되어 재정 및 신용의 악화로 더 이상 신용거래가 불가능 할 때

라."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때 또는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때

(3) 계약기간 중 "을"이 "갑"에 대한 "제4조"의 지원의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기간에 대한 계약 변경 및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지체상금

- (1)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에 대한 장애조치가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 (2) "갑"이 장애 발생을 확인하고 "을"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계산하여 1시간 이내 접수 지연과 2시간 이내 조치가 개시되지 않아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 (3) 1일 평균 계약 금액(부가세별도)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청구한 지체보상금이 월 유지보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면책사항

쌍방은 지진, 폭풍, 홍수 등 천재지변의 발생 또는 군중의 소요, 전쟁, 교통두절 등 불 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1) "갑"과 "을"은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양도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 (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하도급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호협의와 지원

- (1) 본 계약과 관련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 (2) "을"은 "갑"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3)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14조) 기밀유지와 영업권 보호

- (1) 쌍방은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 게 누설해서는 연된다.
-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1) 제14조 1항과 2항을 어길 시 "갑"의 영업피해만큼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분쟁해결

- (1) 쌍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 상식과 일반 상관례를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2)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소재하는 곳의 관할 법원을 지정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본 계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원익IPS Co. Ltd.

'갑'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회사명	원익IPS Co.LTD
	대 표	이 문 용

' <u>9</u>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 원천동 92-8
	회사명	대신네트웍스주식회사
	대 표	연규현
		NY 50 3 2 136

첨 부 #1: 월 유지보수장비 세부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IP-PBX	OfficeServ 7600 (진위본사)	EA	1
IP-PBX	OfficeServ 7400 (평택공장)	EA	1
IP-PBX	LG 키폰주장치(화성사무소)	EA	1

QUOTATION

N 0:

수 신: ㈜원익 IPS 貴中

참 조: 권재현 과장님 貴下

연 락 처: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1. 견 적 금 액: ₩550,000원(VAT포함)

2. 결 제 조 건 : 현금

3. 납 품 예 정 : 발주후 4주 이내 4. 납 품 장 소 : 귀사지정장소 견 적 일 자 2012-12/10 견적유효기간 2주 당 당 자 김병구 F: 214-0115 010-2941-3362



대신네트윅스주식회사 代表理事 延 圭 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2-8 대신빌딩 TEL.031)213-8282 / FAX.031)213-0114

[VAT별도, 금액단위:원] No Part No. Description Q'ty List Price Unit Price Amount Memo 1 전화 교환기 유지보수 1 500,000 500,000 Month - 장애 처리 및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 방문 지원 및 전화, 원격 지원 서비스 **Unit Price Total** 500,000 VAT 50,000 Amount(VAT Included) 550,000 - 진위본사 (OfficeServ 7600) 1EA, 지제공장 (OfficeServ 7400) 1EA, 화성사무소(키폰) 1EA REMARK - 하드웨어 수리 비용 별도

구매자 확인란